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8. 25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8.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 제안이유

○ 환경부 생폐67500－1410(99. 11. 22)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및 용어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법 제63조제2항제2호 → 법 제63조제3항제2호

• 법 제16조제1항 → 법 제12조

• 법 제63조제2항제3호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함(안 제10조)

○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수거·운반 보관기준 설정(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주체는?	○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과와 협의하여 준공시 시공자가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시에서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음
○ 수거용기가 파손되었을 때 부담은 누가 하는가?	○ 시에서 재교환해 주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파손된 것은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검토하겠음
○ 수거용기의 재질 또는 제작형태에 따라 상·하차시 또는 관리소홀로 파손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는데?	○ 추후 계약시 5% 이상 파손된 용기는 수거업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시에서 제작하여 보급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공동주택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실시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도 설치장소가 선정되면 보급토록 조치하겠음
○ 음식물쓰레기 중 연료사용량은 얼마인가?	○ 현재는 모두 사료화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3호
의결년월일	2000. 9. 5 (제80회)

제출년월일 : 2000. 8. 2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환경부 생폐67500－1410(99. 11. 22)호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항 및 용어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법 제63조제2항제2호 → 법 제63조제3항제2호

• 법 제16조제1항 → 법 제12조

• 법 제63조제2항제3호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함(안 제6조)

○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수거·운반 보관기준 설정(안 제10조)

□ 첨 부

○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이를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부천시폐기물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할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산정 부과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행정법 절차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과태료부과기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내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별표 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한다.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 kg당 50～85원의 비용을 부담

－ 공동주택의 경우 : 가구당 월간 1,000～2,000원의 비용을 부담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제7조 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 / 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 리 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 활 용 량	재 활 용 방 법	재 활 용 장 소
	kg/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 표 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제7조 관련)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 방법	자가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 관련)

제신출고자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천시 동 번지 호(빌딩 층 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 / 연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 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1998. 10. 10 조례 제16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또는 압축하여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하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라.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의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이를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

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로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 부과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제6조제1호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

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 10. 10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과태료부과기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			

	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6조제2항관련)	30	50	100

<별표 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한다.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 kg당 50～85원의 비용을 부담

－ 공동주택의 경우 : 가구당 월간 1,000～2,000원의 비용을 부담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 / 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재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 방법	자가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천시 동 번지 호(빌딩 층 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 / 연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 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